대한장애인요트연맹

Korea sailing Federation for the Disabled 정 관

2006년	12월	15일	개	정
2008년	4월	11일	개	정
2009년	2월	27일	개	정
2013년	3월	15일	개	정
2014년	4월	25일	전면변	경

제1장 총 칙

제1조(설립근거 및 명칭) 대한장애인요트연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의해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(이하 "장애인체육회"라 한다)에 가맹·승인된 경기단체로 대한장애인요트연맹(이하 "장애인요트연맹"라 한다)라 하며, 영문으로는 Korea Disabled Sailing Federation(약칭 KDSF)라 한다.

제2장 사 업

- 제2조(목적 및 지위) ① 장애인요트연맹은 장애인요트종목을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하여 장애인의 체력을 향상케 하며, 경기인 및 그 단체를 통할·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인을 양성하여 국위선양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또한 장애인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.
 - ② 장애인요트연맹은 장애인요트 종목을 소관하는 국제장애인경기연맹 또는 장애인요트 영역의 국제장애인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고, 전국을 통할하는 유일한 경기단체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.

제3조(소재지) 장애인요트연맹의 사무소는 국내에 둔다.

- 제4조(조직) ① 장애인요트연맹은 가입을 승인한 시·도지부 및 가맹을 승인 한 전국규모연맹체(이하 "유형별 단체"라 한다)로 조직한다.
 - ② 유형별 단체라 함은 휠체어요트·지적장애인요트·농아인요트·시각장애인

요트를 말한다.

- ③ 기타 장애인요트연맹이 특별히 인정하는 장애인요트연맹도 가입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장애인요트연맹과의 관계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5조(시·도지부) ① 장애인요트연맹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, 각 광역시·도, 특별자치시·도에 지부(이하 "시·도장애인요트연맹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이 경우 시·도 장애인요트연맹은 장애인요트연맹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시·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신청을 하여야 한다.
 - ③ 해외지부가 필요할 경우 대표성이 있는 재외 한인체육단체가 그 역할 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며, 대표성이 있는 재외한인체육단체의 지정 및 요건,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**제6조(전국규모연맹체)** ① 장애인요트연맹는 당해 대의원총회의 승인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국규모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장애인요트연맹은 전국규모연맹체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 규정을 정한 후 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장애인요트연맹는 전국규모연맹체에 전국규모의 선수권대회를 제외한 소관범위내의 경기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.
- **제7조(사업)** ① 장애인요트연맹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사업을 수행한다.
 - 1. 장애인요트의 기본방침 심의·결정
 - 2. 장애인요트에 관한 자문 및 건의
 - 3. 장애인요트의 장애유형별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
 - 4. 장애인요트의 국내·외 경기대회의 개최 및 참가
 - 5. 장애인요트지부의 지원 및 육성
 - 6. 장애인요트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
 - 7. 장애인요트 종목의 선수등록 및 선수관리
 - 8. 장애인요트 경기인 및 지도자, 심판, 등급분류사, 운영 요원 등의 양성
 - 9. 장애인요트 경기시설에 관한 연구와 설치 및 관리
 - 10. 장애인요트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통계
 - 11. 장애인요트 종목에 관한 홍보

- 12. 장애인요트 종목의 경기규정집 발간 및 관리
- 13. 장애인체육회, 장애유형별 국제체육기구와의 업무교류
- 14. 장애인요트연맹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- ② 유형별 체육단체는 장애인요트 영역의 스포츠 발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 유형별 국제 체육기구를 대표하는 유일한 체육단체는 해당 장애유 형별 국내·외 종합대회를 참가 및 개최할 수 있다.
 - 1. 해당 체육단체에 관련된 장애유형별 국제체육기구 및 종목별 국제연맹 (협회)과의 교류
 - 2. 해당 유형별 체육단체에 관련된 경기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조사통계
 - 3. 해당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에 관련된 경기종목에 관한 홍보
 - 4. 장애인체육회, 종목별경기단체와의 업무교류
 - 5. 해당 유형별 체육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 - 6. 해당 유형별 체육단체와 관련된 유형별장애인분과위원 해당 경기단체 추천
 - 7. 해당 유형별 체육단체 지부의 지원 및 육성
 - 8. 해당 유형별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
 - 9. 선수등록과 관리업무는 장애인요트연맹에서 한다. 다만, 유형별 체육단체와 공유하여 관리한다.
 - 10. 해당 유형별 경기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통계
- 제8조(권리와 의무) ① 장애인요트연맹은 장애인체육회 정관 제11조에 따라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, 장애인체육회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.
- ② 장애인요트연맹은 사업계획서, 예산서, 전년도 사업 결과 보고서 및 결산서를 당해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장애인요트연맹이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장애인체육회 정관 제43조에 따라 감사 및 징계를 받아야 한다.

제2장 회 원

제9조(가맹) ① 시·도지부, 전국규모연맹체 등(이하 "단체회원"이라 한다)의 가입은 소정양식에 의하여 가맹신청서를 제출하고,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

- 총회(이하 "총회"라 한다)의 의결로 확정된다.
- ② 단체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하고 장애인요트연맹에서 탈퇴할 수 있다
- 제10조(탈퇴) ① 장애인요트연맹에 가입한 단체회원의 탈퇴는 임의로 할 수 있으며, 이는 장애인요트연맹 이사회의 결의로 확인되고, 이사회는 이를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장애인요트연맹에 가입한 단체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애인요트연맹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박탈한다.
 - ③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.
- 제11조(회원의 권리) 단체회원은 장애인요트연맹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.
 - 1. 총회에 소정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
 - 2. 장애인요트연맹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.
 - 3. 장애인요트연맹의 주최·주관 및 승인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
- **제12조(회원의 의무)** 단체회원은 장애인요트연맹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갖는다.
 - 1. 장애인요트연맹의 정관, 규정 및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2. 당해 단체 또는 개인선수들의 등록을 소정의 양식에 의거 매년 2월 말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.
- 제13조(회원의 제명) 단체회원은 제13조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장애인 요트연맹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.

제3장 대의원총회

- 제14조(대의원) ① 장애인요트연맹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.
 - 1. 시·도지부의 장
 - 2. 전국규모연맹체의 장
 - 3. 장애인요트 선수위원회 대표(대리참석 불가). 다만 선수위원회를 구성

- 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4. 장애유형별 분과위원장(대리참석 불가)
- 5. 심판위원회 대표
- 6. 지도자협의회 대표
- 7. 등급분류협의회 대표
- ② 장애인요트연맹 시·도지부의 장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리인을 5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, 그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.
- 제15조(총회의 구성 및 기능) ① 총회는 제14조 제1항 각 호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구성한다.
-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- 1. 장애인요트연맹의 해산 및 정관(규약) 변경에 관한 사항
 - 2. 장애인요트연맹 시·도지부, 전국규모연맹체 설치 및 제명
 - 3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- 4.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- 5. 기타 중요사항
- 제16조 (정기총회와 임시총회) ① 정기 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.
 -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.
 - 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2.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
 - 3.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
 - 4. 감사가 제29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- ③ 제2항의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요구를 한 이사나 대의원이 회장에게 요청한 총회 소집 요청서를 첨부하고 회의안건, 일시, 장소를 명기하여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-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에 안건·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

-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,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는 후보자를 확정한 후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있다.
- 제17조(의장) ①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. 다만,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부회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, 실무부회장이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.
- ② 제16조 제3항에 따라 이사나 대의원이 소집한 총회의 경우에는 출석대 의원의 의결로 의장을 선출한다.
- 제18조 (의결정족수) ①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대의원총회 의결은 서면결의로 할 수 없다.
- 제19조(임원의 불신임)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,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.
-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해임안이 결의되었을 때에는 당해임원은 즉시 해임된다.
- 제20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1.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당해 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
 - 3.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대의원 또는 임원은 해당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. 다만 총회 참석 대의원 전원이 찬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4장 임 원

제21조(임원) ① 장애인요트연맹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- 1. 회장 1인
- 2. 6인 이내의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20인 이상 30인 이내
- 3. 감사 2인
- ② 임원의 취임은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필요한 경우 관계기 관에 신원사항이나 관련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. 승인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승인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장애인체육회는 직권으로 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.
- 제22조(임원의 임기)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
 - 1. 회장의 임기 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
 - 2. 부회장의 임기 제한 기간 산정에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나,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.
 - 3. 이사 및 감사의 제한 기간 산정에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을 포함한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장애인체육회 임원심의위원 회의를 거쳐 각 호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.
 - 1.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
 - 2. 재정기여, 주요 국제대회성적,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기여가 명확한 경우
- ③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
-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23조(회장의 선출)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
- ② 회장 후보자는 학식과 덕망,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내장애인체육진흥과 장애인요트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.
- ③ 회장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- 1. 회장선거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회장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같다.
- 2. 1차 투표에서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.
- 3. 제2호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, 재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.
- 4. 제1차 투표결과 1위, 2위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1위, 2위 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한다. 결선 투표는 제3호에 따른다.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체육회가 직선제 등 선출방식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, 장애인요트연맹 및 단체회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.
 - 1.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, 제31조 제2항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거나, 60일 이내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한다.
 - 2.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, 60일 이내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하다.
 - 3. 제1호, 제2호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새로 선임된 회장의 임기는 모두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⑤ 장애인요트연맹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- ⑥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장 선출과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- 제24조(임원선임) ①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. 다만, 회장은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30인 이내의 이사 범위 내에서 1회(선임권한 위임의 경우 당해 집행부 제1차 이사회까지로 한다)에 한하여 추천권한을 행사한다.
 - ②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.
 - 1. 동일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%를 초과할 수 없다.
 - 2. 이사 중 3인 이상은 장애인선수 출신으로 한다.
 - 3. 공모를 통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는 비경기인(학계, 언론계, 법조계 등)이 재적 임원수의 20%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 - 4. 여성 임원이 재적 임원수의 30%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③ 실무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, 실무부회장의 수, 기능 등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로 정하고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규정 제·개정, 사업계획, 예산·결산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은 실무부회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.
-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, 대의원 중에서 1인,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리인은 감사에 선임될 수 없다.
-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⑥ 대의원(회장선출 총회에 참석한 대리인 포함)은 임원에 선임될 수 있으나, 재적이사(회장, 부회장 포함)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 이 경우 동일 시·도지부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회장 또는 부회장은 1인을 초과하여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.
- ⑦ 임원이 다른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.
- ⑧ 제29조 제2항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장애 인체육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**제25조(임원의 결격사유)**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장애인요트 연맹의 회장이 될 수 없다.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애인요트연맹의 임원이 될수 없다.
 - 1.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- 3.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4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5.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 - 7.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, 민간단체 등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 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8.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, 민간단체 등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 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- 9.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, 민간단체 등에서 (성)폭력, 승부조작, 직권남용 등의 비위, 또는 해태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
- 10. 해당종목 관련사업체의 대표 및 임원인 자
- ③ 회장의 친족(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은 그 경기단체의 임 원이 될 수 없다.
- ④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경기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- ⑤ 임원이 제1항부터 제4항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.
- 제26조(명예회장 및 고문) 장애인요트연맹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인 및 약간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.
 - 1.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,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.
 - 2.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.
- 제27조(겸직제한) ① 동일인이 장애인체육회의 다른 가맹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. 다만,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 가맹종목의 경기단체 대의원 또는 임원은 겸직할 수 있다.
- ② 장애인체육회의 다른 가맹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장애인요트연맹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에 의거해 대한체육회, 국민생활체육회의 경기단체 회장 후보에 입후보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③ 선임임원 중 회계전문가로서 감사로 선임된 자는 타 가맹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.
- 제28조(임원의 보수)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- 제29조(임원의 직무) ① 회장은 장애인요트연맹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 하다.
-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이 궐위되었거나,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외국 국적의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

다.

-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-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.
 - 1. 장애인요트연맹의 재정상황을 감사하는 사항
 -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사항
 - 3. 장애인요트연맹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회장,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사항
 - 4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,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는 사항
 - 5. 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항
- ⑤ 임원이 장애인요트연맹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1.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
 - 2.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
 - 3.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
- ⑥ 장애인요트연맹 임원이 장애인요트연맹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.
- ① 시·도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요트연맹 시·도지부 등 단체회원의 임원 또는 해당지역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장애인요트연맹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단체에서 직무가 중지되었을 경우 장애인요트연맹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중지된다.
- 제30조(임원의 사임 및 해임)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. 이사,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.
-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.
 - 1. 제21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체육회로부터 승인이 취소 또는 철회된자
 - 2. 제25조에 해당하는 때

- 3. 시·도지부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
- 제31조(시·도장애인요트연맹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) ① 장애인요트연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.도장애인요트연맹의 임원에 대해 구체적 징계 수위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장애인요트연맹의 징계요구에 따라야 한다.
 - 1. 임원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 종목의 시설운영과 사업운영에 관여하거나, 해당 단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
 - 2. 친족간 업무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자
 - 3. 공금횡령, 편파 판정, 승부조작, 폭력,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
 - 4. 장애인요트연맹의 규정을 위반한 자
- ②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요트연맹의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른다.

제5장 이 사 회

- 제32조(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) ①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.
-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- 1.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 - 2.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- 3.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 - 4. 기본 자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
 - 5. 실무부회장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- 6.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
 - 7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- 8.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
 - 9. 기타 중요사항
- 제33조(의결정족수) ①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이사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.

- 제34조(이사회의 소집)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(부회장, 전무이사 순)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.
 -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부의안건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회의 5일 전까지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 - ③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부의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.
- 제35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 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- 1.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- 2. 감사가 제29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-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<u>3분의 2 이상의</u> 찬성으로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하다.
- 제36조(긴급한 업무의 처리) 회장은 그 내용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. 다만, 차기 이사회에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.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.

제6장 각종 위원회

- 제37조(각종위원회의 설치) ① 장애인요트연맹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장애인체육회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각종 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로써 설치할 수 있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.
 - 1. 경기력향상위원회

- 2. 심판위원회
- 3. 등급분류위원회
- 4. 법제상벌위원회
- 5. 선수위워회
- 6. 임원심의위원회
- ② 각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
- ③ 회장과 친족관계인 자(민법 제777조)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- ④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%를 초과할 수 없다.
- ⑤ 심판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.
 - 1. 경기인(비장애인 포함)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30% 이상 포함되어야 하다.
 - 2.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,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.
- ⑥ 등록선수 및 현직 지도자(비장애인 종목 지도자 제외)는 경기력향상(강화)위원이 될 수 없다.
- ⑦ 제1항의 각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 7 장 시·도장애인요트연맹

- 제38조 (지위 및 명칭) ① 시·도장애인요트연맹은 장애인요트연맹의 시·도 지부이며, 각 시·도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. 요트연맹은 시·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할 수 있으며, 그 사무소를 해당 시도에 둔다.
- ③ 시·도장애인요트연맹은 각 시·군·구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- 제39조(임원 승인) 시·도장애인요트연맹의 임원은 시·도장애인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40조(규정 승인) ① 시·도장애인요트연맹은 시·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규정에 의거하되 장애인요트연맹의 정관에 부합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시·도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규정 개정 시마다 승인을 받아야 하다.
- ③ 장애인요트 대회운영 규정 등 종목 관련 전문규정은 장애인요트연맹의 지도·감독을 받는다.

- 제41조(이의신청 및 감사) ① 시·도장애인요트연맹은 장애인요트연맹에 시·도장애인체육회의 규약 및 임원 승인 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, 보고를 받은 장애인요트연맹은 시정사항이 있으면 2주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시·도장애인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시·도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요트연맹의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, 불분명한 경우에는 장애인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.
- ③ 장애인요트연맹은 시·도장애인요트연맹에 위임한 사업 및 예산을 직접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시·도장애인요트연맹을 감사할 수 있다. 이외의 사항은 장애인체육회 정관 및 본 규정, 시·도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요트연맹의 정관등을 준용한다.
- ④ 장애인요트연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·도장애인요트연맹과 소속단체의 조직운영,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·감사할 수 있다.
- ⑤ 장애인요트연맹은 제3항에 따라 조사·감사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해대가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 시·도장애인체육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.
- 제42조 (시·도장애인요트연맹 총회) ① 시·도장애인요트연맹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.
 - 1. 시·도장애인요트연맹이 지부로 승인한 시·군·구지부의 장
 - 2. 해당 종목 시도선수위원회 대표(대리인 참석 불가)
- ② 시·도장애인요트연맹은 제1항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 한다.
- ③ 제2항에 의한 총회 구성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애인요트연맹임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이사회가 총회 기능을 대체하게 할 수있다.
- ④ 제3항의 경우 시·군·구지부의 대표 3인 이상 및 선수위원회대표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.
- 제43조(개최기한 및 규정준용) ① 시·도장애인요트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정기총회를 회장이 소집한다.
- ② 시·도장애인요트연맹 총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체육회 정관 및 장애인요트연맹 대의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8장 자산 및 회계

- 제44조(재원) 장애인요트연맹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.
 - 1. 장애인요트연맹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
 - 2. 기금
 - 3.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
 - 4. 보조금(국고 및 국민체육진흥기금)
 - 5. 사업수익금
 - 6. 기부금 및 찬조금
 - 7. 기타 수익금
- **제45조(재산의 구분)** ① 장애인요트연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다.
- ② 기본재산은 장애인요트연맹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이사회에서 정한다.
-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- 제46조(재산의 관리) 장애인요트연맹의 기본재산을 양도, 증여,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,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당해 회계연도 내에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같다.
- 제47조(잉여금의 처리) 장애인요트연맹의 매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.
 - 1. 이월결손금의 보전
 - 2.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의 이월
 - 3.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
- 제48조(사업계획, 예산, 결산의 승인) ① 장애인요트연맹은 매회계연도 시작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중요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매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- ③ 결산 대의원총회 개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야 한다.
- 제49조(회계연도) 장애인요트연맹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- 제50조(기금 및 적립금) ① 장애인요트연맹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기금 및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한다.
- 제51조(회계처리)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- 제52조(경영공시) 장애인요트연맹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 사업의 추진계획 및 성과 등을 공시한다.

제9장 사무국

- 제53조(사무국) ① 장애인요트연맹은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-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③ 사무국장은 경기단체 사무를 관장한다.
- ④ 사무국장은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.
- ⑤ 장애인요트연맹은 임원의 친족을 사무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 다만,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.
- 제54조(사무국 규정) 사무국 직원의 신분보장을 포함한 사무국 운영에 관한 필요한 회계규정, 국가대표 선발규정, 위임전결 규정은 반드시 정해야 한 다.

제10장 독점적 사용에 대한 권리

- 제55조(독점적 사용에 대한 권리) ① 장애인요트연맹의 "명칭, 로고, 표장" 과 장애인요트연맹가 주최하거나 파견하는 대회와 관련된 국가대표선수, 지도자, 심판의 이름 및 사진에 대해서는 장애인요트연맹이 독점적인 사용권을 갖는다.
 - ② 제1항의 장애인요트연맹 권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나

법인은 장애인요트연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.

③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았으나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 이를 별도로 정한다.

제11장 보 칙

- 제56조(표창 및 징계) ① 장애인요트연맹 장애인요트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하는 권한을 가진다.
 - ②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.
- 제57조(정관 변경) 장애인요트연맹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장애인체육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58조(규정 제·개정) ① 장애인요트연맹은 이 규정을 준용하여 규약(전관)을 제·개정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 이외에 장애인요트연맹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·개정으로 정한다.
- 제59조(정관의 해석) ① 장애인요트연맹의 정관은 장애인체육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, 수정이 있을 때마다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 보고된 규약에 대하여 개·수정 및 삽입이 필요한 때에는 장애인체육회의 결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장애인체육회의 가맹단체운영규정은 장애인요트연맹의 정관에 우선하며,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운영규정과 장애인요트연맹의 정관이 상이할 경우에 는 반드시 가맹단체운영규정에 따라야 한다. 장애인체육회 정관에 규정한 조항을 준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가맹단체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 항 및 장애인요트연맹의 정관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장애인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.
- 제60조(해산) ① 장애인요트연맹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 산한다.

- ② 장애인요트연맹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을 장애인체육회(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)의 승인을 얻어 국가 또는 장애인요트연맹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한다.
- 제61조(관련당사자간의 분쟁해결) 장애인요트연맹은 장애인체육회와 시·도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하여 장애인요트연맹의 지부 및 소관단체 구성원간의 분쟁에 대하여 장애인체육회 정관 제38조에 의거 설치한 법제상벌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62조(준용규칙)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장애인체육회 정관 및 가맹단체운영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('14.4.25.)

- 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제11조 제5항 내지 제13조 제2항, 제6항과 관련 하여 최초 적용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그 임기를 2017년 정기대의원총회 까지로 한다.